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4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2일
발 의 자: 김성준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김기덕, 김인제,
김종길, 김혜지, 박강산,
박수빈, 박승진, 박유진,
박철성, 봉양순, 서준오,
송도호, 송재혁, 아이수루,
, 왕정순, 우형찬, 유정희,
윤기섭, 이경숙, 이민옥,
이승미, 이영실, 임규호,
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
최재란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내 마을버스 대부분은 CNG(압축천연가스) 버스로 운영되었으나,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바, 전기 배터리 점검을 추가하여 안전한 버스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전기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시 전기배터리 점검사항 추가
- 나.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제10조제3항 중 “투명성 제고를”을 “투명성을 높이기”로 한다.
제17조제4항 중 “CNG 용기”를 “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”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투명성 제고를”을 “투명성을 높이기”로 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CNG 용기”를 “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최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
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④ ~ ⑧ (생략)

제17조(안전운행 방안) ① ~ ③
(생략)

④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
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
한다.

⑤ (생략)

-----.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안전운행 방안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
전기배터리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안전 점검 시 전기배터리 점검사항을 추가하게 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김지혜
	☎ 02-2180-7953
	e-mail : kjh0123@seoul.go.kr